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박균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087 발의연월일: 2024. 7. 22.

발 의 자: 박균택·조인철·김준혁

한민수 · 김준형 · 박홍배

맹성규 · 박홍근 · 이기헌

김주영 · 서영교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압구정역 롤스로이스 차량 돌진사건에서 보듯 최근 마약진통제·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·과다·중복처방 등의 오남용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. 특히 의사 셀프처방, 환자 의료쇼핑 등 의료용 마약류 사건·사고가 지속되어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관리 감독 강화가 요구됨.

그러나 의료용 마약류는 마약류 관리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사법경찰관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다양한 행정조치에도 불 구하고 형사벌칙 등 강력한 제재 등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.

이에 의약품 관리의 전문성을 갖추고 자료 접근성이 용이한 식품의 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, 특별시·광역시·도에 근무하며 마약류 단 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에 게 마약류취급자(대마재배자 제외)의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여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5조제9호의2 및 제6조제7호의2 신설).
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의2.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 기관, 특별시·광역시·도에 근무하며 마약류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. 다만, 특별시·광역시·도의 경우에는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별표 1의 공무원 중 수의, 보건, 의무, 약무, 간호, 보건진료 직렬에 한한다.

제6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의2. 제5조제9호의2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행정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마약류취급자(같은 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대마재배자는 제외한다)에 관하여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규정된 범죄. 이경우 법인의 대표자나 이사,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고,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	제5조(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
법경찰관리) 다음 각 호에 규	법경찰관리)
정된 자로서 그 소속 관서의	
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	
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	
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	
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	
및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	
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, 8급ㆍ	
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	
무원 및 소방장 이하의 소방공	
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	
수행한다.	
1. ~ 9. (생 략)	1. ~ 9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9의2.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
	소속 기관, 특별시·광역시·
	도에 근무하며 마약류 단속
	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
	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
	<u>무원. 다만, 특별시·광역시·</u>
	도의 경우에는 「지방공무원
	임용령」 별표 1의 공무원 중
	수의, 보건, 의무, 약무, 간호,

10. ~ 53. (생 략) 10. ~ 53. (현행과 같음)
제6조(직무범위와 수사 관할) 제4 제6조(직무범위와 수사 관할) -조와 제5조에 따라 사법경찰관
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의 직무
범위와 수사 관할은 다음 각
호에 규정된 범죄로 한정한다.
1. ~ 7. (생 략) 1. ~ 7. (현행과 같음)
<< 선 설> 7의2. 제5조제9호의2에 규정된

보건진료 직렬에 한한다. 10. ~ 53. (현행과 같음) 1. ~ 7. (현행과 같음) 7의2. 제5조제9호의2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행정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「마 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 조제5호에 따른 마약류취급자 (같은 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대마재배자는 제외한다) 에 관하여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| 에 규정된 범죄. 이 경우 법인의 대표자나 이 사,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고,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한다. 8. ~ 50. (현행과 같음)

8. ~ 50. (생략)